

## 경운대학교 대학홍보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주요 교육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대내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높이는 대학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기획처장, 사무처장,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위원장을 기획처장이 된다.
- ③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직원 중에서 홍보팀장을 두며,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가 된다.

**제3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대학홍보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내외 대학홍보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대내외 홍보물(소식지, 교내신문, 교지, 브로슈어 등) 기획 및 제작
3. 대학 언론홍보(광고, 특집기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
4. 외부광고(옥탑광고, 배너광고 등)에 관한 제반 사항
5. 온라인홍보(홈페이지, SNS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6. 경운대학교 학생홍보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7. 기타 대학홍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수당)**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홍보팀장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